

제 2 절 세무과

1.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국가로부터 수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행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위생, 교통, 청소, 교육, 문화, 예술진흥 등 일반적인 사업에, 목적세는 도시계획, 소방시설, 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사용된다.

나.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시세(13개 세목), 구세(3개 세목)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시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구세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 목적세 : 사업소세

다. 지방세 주요 세목별 성질

1) 시 세

가) 취득세

재산권의 유통과정에서 재산권의 취득시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및 건물의 증·개축,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나) 등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과세되며,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다)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 (1)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 및 농업소득세액의 10%이며
- (2)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개인·법인·사업장할) 주민세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기여도가 가장 잘 부각된 세목이다.

라)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포함된 세금으로 매년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 (1)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로 부과
 -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
- (2)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비영업용 승용차량구입(등록기준일)후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체감하여 차령 12년 이상 경과시 50% (한도)까지 경감
- (3) 소유권 이전 등록시 신청하던 일할계산 신청이 폐지되고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부과

2) 구 세

가) 면 허 세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검사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방세법상 별표에 열거된 대상을 과세객체로 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과징하고 있다.

나) 재 산 세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하며, 각각의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다) 사업소세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다.

사업소세 납부기준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할은 매월 종업원 50인 초과,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2006년도 지방세정 운영

가. 지방세정 운영방향

2006년도 지방세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건실한 운영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인천시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이루어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공평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열린 지방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 등에 대한 착실한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였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하였고 세무조사활동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자료 관리의 전산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 교육훈련 참여와 세정업무에 대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나. 지방세 부과징수

200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27,788백만원을 부과하여 284,73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구세 및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1) 200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2007.2.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 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율		
					(C/A)	(C/B)	
합 계	계		245,962	327,788	284,740	115.8	86.9
	시 세		213,163	287,351	251,074	117.8	87.4
	구 세		32,799	40,437	33,666	102.6	83.3
현 도	계		239,959	292,303	280,341	116.8	95.9
	시 세	소 계	208,255	258,019	247,805	119.0	96.0
		취 득 세	57,660	58,919	57,804	100.2	98.1
		등 록 세	52,512	75,653	75,444	143.7	99.7
		주 민 세	46,134	57,904	54,156	117.4	93.5
		자 동 차세	14,946	18,863	15,937	106.6	84.5
		도시계획세	14,396	16,921	16,251	112.9	96.0
		공동시설세	5,651	5,988	5,693	100.7	95.1
		지역개발세	6	9	8	133.3	88.9
		지방교육세	16,950	23,762	22,512	132.8	94.7
	구 세	소 계	31,704	34,284	32,536	102.6	94.9
		면 허 세	824	978	902	109.5	92.2
		재 산 세	24,613	26,527	24,968	101.4	94.1
		종합토지세	0	5	4	-	80.0
		사 업 소세	6,267	6,774	6,662	106.3	98.3
과 년도	계		6,003	35,485	4,399	73.3	12.4
	시 세		4,908	29,332	3,269	66.6	11.1
	구 세		1,095	6,153	1,130	103.2	18.4

2)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도	2005년 도	2006년 도
목 표 액	213,717	233,721	245,962
부 과 액	261,292	278,045	327,788
징 수 액	207,449	224,535	284,740

다. 지방세정 운영

1)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운영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인 e-tax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다.

2)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개선

인터넷사용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세정을 실천하였다.

3)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세정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였다.

4)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실천함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과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점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납세홍보물 유인 배부, 반상회보 게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세 납기전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구민을 존중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5)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전직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등록, 급여·보험금 및 예금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과년도 체납액 35,485백만원중 12.4%인 4,399백만원을 징수,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6)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납세자, 탈세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루세원을 근절하였으며, 정책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3. 2007년 지방세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년 목표액(A)	2007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계	241,842	276,745	34,903	114.4	
	시 세	213,197	243,549	30,352	114.2	
	구 세	28,645	33,196	4,551	115.9	
현 년 도	계	235,932	269,528	33,596	114.2	
	시 세	소 계	208,289	237,495	29,206	114.0
		취 득 세	57,660	59,756	2,096	103.6
		등 록 세	52,512	64,970	12,458	123.7
		주 민 세	46,134	52,519	6,385	113.8
		자동차세	14,946	15,848	902	106.0
		농업소득세	0	0	0	-
		도시계획세	14,216	17,767	4,453	125.0
		공동시설세	5,865	6,693	828	114.1
		지역개발세	6	6	0	100.0
		지방교육세	16,950	19,936	2,986	117.6
	구 세	소 계	27,643	32,033	4,390	115.9
		면 허 세	824	836	12	101.5
		재 산 세	20,777	25,134	4,357	121.0
		종합토지세	0	0	0	-
		사업소세	6,042	6,063	21	100.3
과 년 도	계	5,910	7,217	1,307	122.1	
	시 세	4,908	6,054	1,146	123.3	
	구 세	1,002	1,163	161	116.1	